

[별표 1] 사전지원제외 대상여부 검토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참여제한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2. 공고문 내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신청 자격 부적합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3. 연구개발계획서의 과제의 기존 개발 또는 지원된 과제와의 차별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유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는 차별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4.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 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 과제선정 전: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지원제외 심의 - 과제선정 후: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과제 중단 심의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과제 중단 여부를 결정

5. 혁신법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여부

-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